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6. 2. 16

나. 회부일자 : '96. 2. 16

3. 제안이유

○ 정부의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육성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되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자금지원 범위를 구조조정, 경영안정지원에서 입지지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 특별지원지역, 종합지원센터 지원까지 포함 확대함. (안 제5조 및 제9조)

○ 자금지원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제조업)에서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임대사업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사업자, 연쇄화사업 직·기맹점, 상점가진흥조합, 상입협동조합 조합원까지 포함 확대함. (안 제6조)

○ 응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 위원장(지역경제국장) 포함 7인 이내를 (규칙)
-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10인 이내로 조정함. (안 제13조)

○ 기금관리공무원을 조정함. (안 제19조)

- | | | | | |
|-----------|--------|---|---------|----------|
| - 기금출납명령관 | : 담당과장 | → | 기금운용관 | : 사업담당국장 |
| - 기금출납원 | : 담당계장 | | 기금분임운용관 | : 담당과장 |
| | | | 기금출납원 | : 담당계장 |

○ 사업이 종료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관리, 운영규정을 폐지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정부의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전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육성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기업의 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금지원 범위에 있어서는

구조조정, 경영안정지원에서 입지지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 특별지원지역, 종합지원센터 지원까지 포함하여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있어서는

제조업에서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임대사업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사업자, 연쇄화사업 직·가맹점, 상점가전홍조합, 상업협동조합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며

셋째,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분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분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분야의 해당
업체에 융자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자금,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 중소유통업구조개선지
원자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원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세분화 확대
하였으며

넷째,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본 조례에 명문화 시키고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담당국장이 되도록 하였음.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충북지방중소기업 사무소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 본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장
 4. 산업기술정보원 충북지역정보센터 소장
 5. 상공회의소 회장 1인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음.

다섯째, 기금관리공무원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을 사업담당과장에서 사업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하여 사업담당과장으로 기금을 관리토록 하는 등

자금지원 범위와 자금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